「빛마루방송지원센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4. 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빛마루방송지원단 빛마루사업관리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1)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2)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3)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B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6)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7)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9)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1)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타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8.31.) 이에 우리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보호의무를 준수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목 차

Ⅰ. 사업 개요 ····· 1

Ⅱ. 과업내용 ····· 3

Ⅲ. 대가지급 및 손해배상 ····· 5

Ⅳ. 계약의 해지 ····· 7

Ⅴ. 안전관리 및 기타 ····· 8

Ⅰ 사업개요

1. 추진목적

o 빛마루방송지원센터(이하 “발주자” 라 한다)에서 배출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하 “폐기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폐기물위탁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 라 한다)에게 적재·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함.

2. 개 요

o 용 역 명 : 빛마루방송지원센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

o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o 용역내용 :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업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o 업체선정 : 제한경쟁(지역제한) / 적격심사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추정가격 5억원미만)적용

o 소요예산 : 금 35,283,600원/부가세포함

- 산출근거: 처리단가 326,700원/톤(VAT포함) * 108톤/년

※ 환경부고시 제2021-259호를 적용하여 처리단가 산정

3. 연간 처리예정량 : 약 108톤

o 처리예정량은 추정량이며, 매월 처리량에 따라 계약단가에 의한 처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함

4. 입찰자격조건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업종코드:1227)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o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업종코드 125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 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o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

o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I 과업내용 및 준수사항

5. 과업내용

o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o "계약상대자" 는 "발주자" 가 지정한 장소에 배출된 폐기물을 지정한 일자와 시간에 적재·운반 및 처리해야 한다.(자체 인력을 이용한 이동 및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 배출처 : 빛마루 지하1층 폐기물 집하장(차량높이 2.4m 이하 허용)

o "계약상대자" 는 폐기물의 적재·운반 및 처리를 "발주자" 의 필요에 의하여 요청할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o 폐기물 적재·운반 및 처리 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용역 시행 전 차량에 대한 공차중량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차중량 변경 시에도 이를 "발주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발주자" 의 폐기물 처리 요청 시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의 사업장에 반입하여 총 중량을 계근한 후 적법하게 처리하고 "발주자" 에게 처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계약상대자" 는 폐기물 적재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야 하며, 운반 도중 폐기물 또는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게 하여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o "계약상대자" 는 계약 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계약상대자” 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 및 허가조건을 철저히 준수 한다.

o “계약상대자” 는 “발주자” 의 입회하에 센터에서 폐기물 적재·운반을 원칙으로 한다.

o 폐기물 적재·운반 및 처리 시 등록된 적재·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적재·운반 작업시간은 “발주자” 가 별도의 요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08:30~12:00까지로 한다.

o “계약상대자” 는 본 계약기간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적재·운반 및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발주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계약상대자” 는 “발주자” 로부터 위탁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

III 대가지급 및 손해배상

7. 대가지급

o 반출된 생활폐기물량에 따라 폐기물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o “발주자”는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한 폐기물 처리완료 실적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월 1회 정산 지급

- 폐기물 처리완료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폐기물 처리완료 실적에 의한 지급

o “계약상대자”는 매월 폐기물 적재·운반 및 처리 등의 처리완료 후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폐기물처리 대금 청구서 1부.
- 폐기물 계량증명서 1부.
- 폐기물처리완료 증빙서류(처리확인서, 인계서 및 증빙사진 등)
- 기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증빙서류.

o “발주자”는 첨부된 서류를 확인하여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인정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발행 후 5일 이내에 계약 단가금액에 의하여 정산하여 지급 한다.

o “계약상대자”는 처리비용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8. 손해배상

o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

o 본 과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도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발주자” 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 는 해당 금액을 환불 또는 폐기물 위탁 처리로 대체·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계약상대자” 는 생활폐기물 처리과정과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책임을 진다.

o 폐기물 적재 이후 발생되는 사고일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가 진다.

o “계약상대자” 는 “발주자” 에게 위탁 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o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의 계약위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에게 귀속한다.

Ⅳ 계약의 해지

9. 계약의 해지

o “발주자” 와 “계약상대자” 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 가 본 과업지시서 제5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야기 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계약상대자” 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빛마루방송지원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계약상대자” 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의 이행 중 “발주자” 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2회 이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 는 “발주자” 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을 양도 또는 담보하였을 때
- “발주자” 의 사정으로 과업기간 중 계약해지를 위해 1개월 전 서면 통보할 경우

V 안전관리 및 기타

10. 안전관리 및 주의사항

o “계약상대자” 는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관련법규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o “계약상대자” 는 종업원이 폐기물 적재·운반 등 빛마루방송지원센터 폐기물 작업과 관련하여 기물의 손괴 등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o “발주자” 의 건물 내에서 차량 이동시 “계약상대자” 의 차량은 차량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o “계약상대자” 는 계약 내용의 수행 시 “발주자” 가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1. 기타

o “계약상대자” 의 귀책사유로 생활계폐기물 처리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발주자” 의 평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o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것이라도 폐기물 적재·운반 및 처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다만,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o “발주자” 는 “계약상대자” 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o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o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에 의한다.